



제 394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EBS의 업무에 소프트웨어 교육 포함 〉
■ 조명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580호)

2022.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기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2
1. 공사의 업무 확대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제1호)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명회의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2. 1. 26.

다. 회 부 일 : 2022. 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에 차질이 생기는 등 공교육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비교적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를 소프트웨어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의 업무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의 개발·보급을 추가하고, 공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Ⅲ. 참고사항

없음

Ⅳ. 검토의견

1. 공사의 업무 확대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제1호)

개정안은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공사(EBS)의 업무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의 개발·보급”을 추가하고 업무 수행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 7. (생략)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 <u>제4호의2</u> 및 <u>제5호부터 제7호까지</u> 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u><신설></u>	제7조(업무) ①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의 개발·보급 6. · 7. (현행과 같음) 8.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 ② 공사가 제1항제5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검토 의견

- 현행법 제7조¹⁾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의 업무를 열거하고 있음. EBS의 대표적인 업무는 텔레비전·라디오·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등임.
- 한편, 현행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안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에 차질이 생기는 등 공교육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또한 현재 공교육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교육의 수업 시수²⁾가 불충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교육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업무에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의 개발·보급을 추가”하고 공사가 그 업무를

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7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2.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3. 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4의2.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
5.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6.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7. 교육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2) 초등학교: 17시간, 중학교: 34시간, 고등학교: 선택 교과

수행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마련하려는 것임.

-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EBS의 설립 취지 및 공사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조항을 고려할 때³⁾,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실제로 현재 이숲(EBS-SW)⁴⁾ 등을 통해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지원해오고 있는 점과 소요 경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두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소프트웨어 교육’만을 특정하여 공사의 업무에 명시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현행법 제7조 각 호에서도 공사의 업무를 송출 수단(텔레비전, 라디오, 위성)에 따라 구분하였을 뿐, 교육의 내용까지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함.

- 또한, 현행법 제5조제1항⁵⁾은 공사의 정관 기재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出捐額)
2. 「방송법」 제68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교육정보 제공체제의 운영에 따른 이용료·수수료 및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4) SW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준별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교육 및 범국민 무료 SW교육 온라인 플랫폼(참고자료 4. 이숲(EBS-SW) 서비스 구성도 참조)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SW교육 교실수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국가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맞는 초, 중, 고등학교 SW 교과 학습 콘텐츠와 실습 제공
- 홈페이지 빌더를 통해 기관 또는 학급 단위로 ‘이숲’에 자체 홈페이지(학급페이지)를 만들어 오프라인과 병행한 혼합학습(Blended Learning) 기반 SW 교육 지원

이 중 제6호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의 정관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명시하는 것으로도 개정안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뉴노멀시대에 메타버스가
화두로 대두되고, IT기기의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소프트웨어 활
용능력은 전 국민이 갖추어야 할 기초 소양이라고 볼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능력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일상
생활에서 중요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소프트웨어 교육 활
성화를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임.
- EBS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① 직접적인 소프트웨어교육, ② 논리·
수리·창의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수준의 교육과정 구성, ③ 기업,
취업준비생, 중장년층의 신산업 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 분야에
서도 공사의 소프트웨어교육 시스템이 생애주기별로 활용되게 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를 잘 구현하겠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6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